##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94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김기표·백혜련·정준호

민홍철 • 신영대 • 김현정

황운하 · 강득구 · 한준호

추미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,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「건축사법」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.

그러나 「건축사법」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·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, 제31조의3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0호"를 "제1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3(징계) ① 국토교통부장	제30조의3(징계) ①
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	
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	
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나 <u>제10호에</u> 해당하	<u> </u>
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	
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
	령을 위반한 경우
<u>9</u> . · <u>10</u> . (생 략)	<u>10</u> .・ <u>11</u> . (현행 제9호 및 제10호
	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1조의3(건축사협회의 가입의	제31조의3(건축사협회의 가입의
무) (생 략)	무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정관
	을 준수하여야 한다.